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인용하여 약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받는 자, 이하「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정산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 정산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0507-10703093-13344132

0507-10703093-13344132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갱신보험료를 대체하거나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갱신예비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보장보험료」와「갱신예비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⑥ 제5항의 갱신보험료라 함은「[갱신형]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갱신형]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특별약관, [갱신형]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 특별약관, [갱신형] 3대장애(시각, 청각, 언어) 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1) 특별약관,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4)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1) 특별약관,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4) 특별약관, [갱신형] 5대장기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갱신형]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갱신형]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 [갱신형] 부정교합 치료비 특별약관, [갱신형] 시력 교정비 특별약관, [갱신형] 시력 치료비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이하「갱신보험료」라 합니다)를 말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차(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 정산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한 날 또는 다시 드린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정산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정산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6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대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19조(해약 정산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 정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해약 정산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갱신예비적립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고, 대체납입하는 갱신보험료를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 및 갱신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 및 갱신보험료를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보험계약대출이율 - 4%
1년이상 ~ 2년미만	보험계약대출이율 - 3%
2년이상	보험계약대출이율 - 2%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 정산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장애인등록증, 관할행정기관의 사실확인원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

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 정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 정산환급금과 해약 정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 정산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 정산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정산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특별약관

1. 상해 장해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 장해치료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5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장해치료비(이하「상해 장해치료비」라 합니다)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정 지급합니다.

구분	50% 이상 80% 미만 후유장해시	80% 이상 후유장해시
상해 장해치료비	10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 지급	10년간 매년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200% 지급

② 제1항의 상해 장해치료비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장해치료비를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장해치료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 장해치료비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상해 장해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장해치료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상해 장해치료비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로 상해 장해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 장해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또는 상해 장해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 ⑨ 제1항의 상해 장해치료비는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정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상해 입원일당(4일 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4일 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입원일당(4일 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4일 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상해 장기입원비(31일 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사고에 대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장기입원비(31일 이상)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 장기입원비(31일 이상)를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장기입원비(31일 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 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신체 표면적은 "9의 법칙(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 되어 진 것을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 합니다.

② 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 확정 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뇌·내장 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뇌·내장 손상 수술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

래에 정한 상태(이하 「뇌·내장 손상」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내장 손상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별표 2】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 肺, 胃, 腸, 肝臟, 脾臟, 腎臟, 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2】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내장 손상 수술비 지급 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3】(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 진단비는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4】(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골절 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매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1. 5대 골절진단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5】(5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5대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5대 골절진단비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5대골절 진단비는 매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추가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추가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8. 골절 진단비(치아과절제외)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5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5】(5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5대 골절」이라 합니다)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 골절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5대 골절수술비는 매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5대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5대골절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상해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상해의료비(이하 「상해의료비」라 합니다)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갱신형]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하 「폭력피

해」라 합니다)에는 학원폭력위로금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②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상해 입원의료비(D)(이하 「상해 입원의료비(D)」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상해 입원의료비(D)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한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상해 입원의료비(D) 보상한도는 사고일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부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상해 입원의료비(D)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의료비(D)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기능장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동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1)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 통원의료비(1)(이하 「상해 통원의료비(1)」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 통원의료비(1)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2항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상해 통원의료비(1)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한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 통원의료비(1) 보상한도는 사고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상해 통원의료비(1)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기능장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의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4)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 통원의료비(4)(이하 「상해 통원의료비(4)」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 통원의료비(4)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2항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3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상해 통원의료비(4) 총액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최고 3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한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 통원의료비(4) 보상한도는 사고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상해 통원의료비(4)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갱신형] 다발성 소아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5조(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다발성 소아암」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발성 소아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다발성 소아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다발성 소아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 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 참조)인 수막의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포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포형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포형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다발성소아암 진단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다발성소아암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부터 가입일이후 1년미만	가입일이후 1년이상부터 가입일이후 2년미만	가입일이후 2년이상	
다발성 소아암 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0%

단,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가입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6. [갱신형]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7조(암진단비)에서 정한 암진단비 중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단,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해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부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암진단비)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이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진단비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부터 가입일이후 1년미만	가입일이후 1년이상	
암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진단시 갑상샘암진단시 상피내암진단시 경계성종양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단,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가입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제1항의 암진단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10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7. [갱신형]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8】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제7조(암입원일당)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입원시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암입원일당
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갑상샘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상피내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경계성종양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②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입원일당을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10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8.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중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

(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 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하여 각각 1회에 한해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

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하「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라」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이 특별약관에서 "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이 특별약관에서 "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이하「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부터 가입일 이후 1년미만	가입일 이후 1년이상	
암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00%
·기타피부암으로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치료시 ·갑상샘암으로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치료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1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의 20%

단,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가입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제1항의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후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갱신계약이라 함은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을 말합니다.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9.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 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

의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4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0507-10703093-13344132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

0507-10703093-13344132

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갱신형]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 장기입원비(3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양성뇌종양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양성뇌종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양성뇌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양성뇌종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단,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신경외과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

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3. [갱신형]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음식물의 섭취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별표10】(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분류표)에 정한 질병(이하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별표10】(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4. [갱신형]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기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기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기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

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5. [갱신형]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3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인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text{mm}^3$ 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 이고 동시에 다음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text{mm}^3$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text{mm}^3$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text{mm}^3$ 미만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 됩니다.

④ 제1항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

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6. [갱신형] 질병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질병(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 입원의료비(D)(이하 「질병 입원의료비(D)」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입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 ⑤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 입원의료비(D) 총액의 40% 해당액을 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질병 입원의료비(D)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D)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진단확정일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D)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⑧ 제1항 또는 제5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5항의 비용(발생의료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 입원의료비(D)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고의
3.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계약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외과적수술 및 그 밖의 의료처치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2.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별표 12】(질병 입·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상병 분류표) 참조)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2. 정신 및 행동장애
3.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5. 임신, 출산, 유산 및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뇌의 선천 기형
7.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④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피임시술 및 불임치료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7.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

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7.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1)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질병(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 통원의료비(1)(이하 「질병 통원의료비(1)」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 통원의료비(1)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2항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질병 통원의료비(1)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 통원의료비(1)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 통원의료비(1)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진단확정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질병 통원의료비(1)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0507-10703093-13344132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고의
3.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계약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외과적수술 및 그 밖의 의료처치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2.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사유

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별표 12】(질병 입·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상병 분류표) 참조)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2. 정신 및 행동장애
 3.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5. 임신, 출산, 유산 및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뇌의 선천 기형
 7.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④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피임시술 및 불임치료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7.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8.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4)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

다)중에 질병(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 통원의료비(4)(이하「질병 통원의료비(4)」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 통원의료비(4)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2항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30만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질병 통원의료비(4) 총액에 대하여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

당액을 최고 3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 통원의료비(4)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 통원의료비(4)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진단확정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질병 통원의료비(4)를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고의
3.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계약자의 고의
5.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외과적수술 및 그 밖의 의료처치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12.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과거 5년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별표 12】(질병 입·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상병 분류표) 참조)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2. 정신 및 행동장애
3.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5. 임신, 출산, 유산 및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뇌의 선천 기형
7.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④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피임시술 및 불임치료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7.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

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9. [갱신형] 부정교합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부정교합 치료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Angle씨 부정교합(不正咬合) 분류법의 II급 또는 III급으로 치과 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 치료를 요한다는 치과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정교합 치료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Angle씨 부정교합분류>

구분	분류
II급	하악대구치(아래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어금니)에 비해 원심(안면에서 후방)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III급	하악대구치(아래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어금니)에 비해 근심(안면에서 전방)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단순치열교정 등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일에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 [갱신형] 시력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시력 치료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안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 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근시 또는 +4.25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원시로 판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력 치료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용 어 풀 이 >
디옵터(Diopter) :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 거리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일에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1. [갱신형] 시력 교정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시력 교정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보험기

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디옵터(Diopter) 이상의 근시 또는 +2디옵터(Diopter) 이상의 원시에 의한 굴절이상(Anomalies of Refraction)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력 교정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용 어 풀 이 >
디옵터(Diopter) :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 거리의 역수로 표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일에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

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2. [갱신형] 5대장기이식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 수술비를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대장기이식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에서 5대장기라 함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⑦ 제6항의「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5대장기이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 이식의료기관)에 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장기이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⑧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

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3. [갱신형] 3대장애(시각, 청각, 언어)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3대장애(시각, 청각, 언어) 위로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엠파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이하 "3대장애"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 【별표11】(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이 된 경우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3대장애(시각, 청각, 언어) 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시각, 청각, 언어) 위로금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이하「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범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갱신계약 제도 및 보험료 적용)

-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통약관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매월 말일에 자동으로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전액을 대체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4. 유괴납치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90일한도로 유괴납치위로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억류상태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아래 옮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접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5. 자녀 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7.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3.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존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는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물 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
2.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5호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는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한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 정산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통약관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6. 선천이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0.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체결시 임신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 「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신생아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제2조(출생통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1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 「선천성이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성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술 1회당 선천성이상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이상 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선천성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선천성 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7. 저체중아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0.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체결시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 「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신생아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제2조(출생통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3일 이상 사용했을 때 최고 60일을 한도로 하여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저체중아 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인큐베이터 사용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인큐베이터 사용완료 전까지의 계속사용에 대하여는 저체중아 입원일당은 계속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태아 출산의 경우 태어난 각각의 신생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중아 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임산부가 임신 23주 이상으로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중아 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사항 중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8.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0.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체결시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 「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신생아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제2조(출생통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별표14】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하 「출생전후기 질병」이라 합니다)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출생전후기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출생전후기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

원으로 간주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출생전후기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태아출산의 경우 태어난 각각의 신생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출생전후기의 정의)

제3조(보상하는 손해) 의 제1항 「출생전후기」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임산부가 임신 23주 이상으로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 ①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단, 사망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9.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0.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의 태아는 출생시 피보험자가 되며,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제2조(출생통지)

- ①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변경승인신청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② 회사는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3조(유산 또는 사산)

-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변경승인신청서(회사양식)

2.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③ 회사는 제2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4조(복수출생의 경우)

-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상 먼저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경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가족관계등록상 다음순위의 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와 같이 계약자가 새로운 피보험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 ④ 계약자가 제3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경승인신청서(회사양식)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⑤ 제3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때부터 변경 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⑦ 제3항의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전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⑧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경우에는 제3항의 피보험자 변경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나이)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의 계산)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의 나이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출생일(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기준으로 합

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6조(보험나이의 계산 및 특례)

계약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0세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체결시 가입자녀가 태아일 경우의 보험료는 가입자녀 남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후 가입자녀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장부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추징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0.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5조(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6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6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후유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0-1. 엄마 질병사망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된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2조(보험나이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단, 제1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0. 엄마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별약관 및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추가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추가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8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엄마 질병사망보험금(이하 「질병사망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8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

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⑧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후유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8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1. 부양자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5조(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제6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6조(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후유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1-1. 부양자 질병사망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체결 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2조(보험나이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단, 제1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1. 부양자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 ② 제1항 이외에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별약관 및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추가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추가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8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양자 질병사망보험금(이하 「질병사망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8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에서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동일한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후유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8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41-2. 자녀양육자금(1) 추가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녀양육자금(1)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1. 부양자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추가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추가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8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녀양육자금(1)(이하 「자녀양육자금(1)」라 합니다)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정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녀양육자금(1)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자녀양육자금(1)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자녀양육자금(1)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자녀양육자금(1)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애에 대한 자녀양육자금(1)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자녀양육자금(1)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자녀양육자금(1)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로 자녀양육자금(1)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2. 위1호 이외에 이 추가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양육자금(1)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또는 자녀양육자금(1)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애

⑨ 제1항의 자녀양육자금(1)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1-3. 자녀양육자금(2)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나이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 ①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녀양육자금(2)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1. 부양자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추가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추가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추가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녀양육자금(2)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1.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 15】(질병 고도장애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상태(이하 「질병 고도장애」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질병에서 보험계약 청약일(이하 「보험계약 청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질병 고도장애라 함은 【별표15】(질병 고도장애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15】(질병 고도장애 판정기준)의 2. ~ 11.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 진단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단, 신장장해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⑧ 제1항의 자녀양육자금(2)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만기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은 「특별약관」,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험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

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장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5. 전자거래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교부)

- ① 회사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1조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등이 직접 서명 날인(도장을 찍음)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을 받은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증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보험료가 이체된 날과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보장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6.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별표16】(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의 40-1. 엄마 질병사망 추가특별약관 및 41-1. 부양자 질병사망 추가특별약관에서의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16】(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 1~39번)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별표16】(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 40~44번)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⑥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7.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의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엄마사랑 자녀보험(0904.1)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0507-10703093-13344132

【별표1】

장 해 분 류 표

< 총 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

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애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

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컷바퀴의 결손

- 1)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컷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컷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륜(%)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륜(%)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ㄱ, ㅋ, ㆁ)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ㆁ, ㆅ)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507-10703093-13344132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text{cm}$ (1/2 크기는 40cm^2 ,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times 8\text{cm}$ (1/2 크기는 24cm^2 ,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text{cm}$ (1/2 크기는 12cm^2 ,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뚜렷한 운동장애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을 때
-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 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 급 륜(%)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

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구분

장 해 의 분 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 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풀이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 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별표2】

뇌 · 내장 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 · 내장손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상해명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1. 뇌손상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1.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S02.0
	2. 머리뼈바닥의 골절	S02.1
	3. 안와바닥의 골절	S02.3
	4.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S02.7
	5. 기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8
	6.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9
	[머리내 손상]	
	1. 미만성 뇌손상	S06.2
	2. 경막위 출혈	S06.4
	3. 외상성 경막밑 출혈	S06.5
	4.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S06.6
	5.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머리내 손상	S06.7
	6. 기타 머리내 손상	S06.8
	7. 상세불명의 머리내 손상	S06.9
	[머리의 압착손상]	
	1. 머리뼈의 압착손상	S07.1
	2. 기타 머리부분의 압착손상	S07.8
	[머리부분의 외상성 절단]	
	1. 기타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8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 혈관의 손상	S09.0
	2. 머리의 다발성 손상	S09.7

0507-10703093-13344132

상해명	대상 상병명	분류번호
2. 내장 손상	[심장의 손상]	
	1.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	S26.0
	2.기타 심장의 손상	S26.8
	3.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S26.9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손상]	
	1.폐의 기타 손상	S27.3
	2.기관지의 손상	S27.4
	3.가슴기관의 손상	S27.5
	4.가슴막의 손상	S27.6
	5.가슴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	S27.7
	6.기타 명시된 가슴내의 장기의 손상	S27.8
	7.상세불명의 가슴내 장기의 손상	S27.9
	[가슴의 압착손상 및 가슴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가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복부,하배부 및 골반 부위에서의 혈관의 손상]	S35
	[복부내 기관의 손상]	
	1.지라의 손상	S36.0
	2.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S36.1
	3.췌장(이자)의 손상	S36.2
	4.위의 손상	S36.3
	5.작은창자의 손상	S36.4
	6.결장의 손상	S36.5
	7.직장의 손상	S36.6
	8.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	S36.7
	9.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6.8
	[비뇨기 및 골반 장기의 손상]	
	1.콩팥(신장)의 손상	S37.0
	2.요관의 손상	S37.1
	3.방광의 손상	S37.2
	4.요도의 손상	S37.3
	5.난소의 손상	S37.4
	6.난관의 손상	S37.5
	7.자궁관 손상	S37.6
	8.다발성 골반 장기의 손상	S37.7
	9.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	S37.8
	[복부,하배부 및 골반 부분의 압착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골반 기관을 동반한 복부내 기관의 손상	S39.6

- 주) 1.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정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의 분류표에서 3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에 대해서는 3단위 항목표에 포함된 4단위 항목의 상병을 모두 보상하며, 4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는 그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상병만을 보상합니다.

【별표3】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L59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 (S02.5제외)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0507-10703093-13344132

【별표5】

5대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3. 1. 1시행)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의 압착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S22.0 - S22.1
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5.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제6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5대골절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발성 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2. 뇌의 악성신생물	C71
3.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72
4. 호지킨병	C81
5.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C82
6.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C83
7.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C84
8.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9. 림프 백혈병	C91
10. 골수성 백혈병	C92
11. 단핵구성 백혈병	C93
12.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기】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 림프종 모양 구진증	L41.2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 불명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0507-10703093-13344132

【별표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단클론성 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D76.0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0507-10703093-13344132

【별표 10】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2. 이질	A03
3. 기타 세균성 창자 감염	A0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식중독	A05
5. 아메바증	A06
6. 기타 원충성 창자 질환	A07
7.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T61
8.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T62

제6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식중독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1】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관련)

1.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2.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0507-10703093-13344132

【별표12】

질병 입·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상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질병 입·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대 상 상 병 명	분류번호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A50-A64)	
1) 선천성 매독	A50
2) 조기 매독	A51
3) 만기 매독	A52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매독	A53
5) 임균성 감염	A54
6) 클라미디아 림프육아종(성병성)	A55
7)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성 질환	A56
8) 연성하감	A57
9) 서혜육아종	A58
10) 트리코모나스증	A59
11) 항문성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포진] 감염	A60
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 질환	A63
13) 상세불명의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A64
2.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1)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F00~F09
2)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0~F19
3)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4) 기분[정동] 장애	F30~F39
5)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F40~F48
6)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 증후군	F50~F59
7)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F60~F69
8) 정신 발육지체	F70~F79
9) 정신 발달 장애	F80~F89
10)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11)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	F99

0507-10703093-13344 132

대 상 상 병 명	분류번호
3.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1) 치핵	I84
2)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K60
3)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K61
4)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K62
5) 비뇨기계의 기타 장애	N39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00-K08)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萌出) 장애	K00
2) 매몰치 및 매복치	K01
3) 치아우식증	K02
4)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5)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K04
6) 치은염 및 치주 질환	K05
7) 치은 및 무치성 치조용선의 기타 장애	K06
8)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K07
9)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5. 임신, 출산 및 산후기 (000-099)	000-099
6. 뇌의 선천 기형 (Q00-Q04)	
1) 뇌없음증(무뇌증) 및 유사 기형	Q00
2) 뇌류	Q01
3) 소두증	Q02
4) 선천 수두증	Q03
5) 뇌의 기타 선천 기형	Q04
7.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S00~T98

제6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0507-10703093-13344132

【별표1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Q07
2. 눈, 귀, 얼굴, 목의 선천기형	Q10-Q18
3.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Q20-Q28
4. 호흡기계통의 선천기형	Q30-Q34
5. 입술 갈림증 및 입천장 갈림증	Q35-Q37
6. 소화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38-Q45
7.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Q50-Q56
8.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	Q60-Q64
9.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65-Q79
10. 기타 선천기형	Q80-Q89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90-Q99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14】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2007-4호, 2008.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모성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0-P04
2. 임신 기간 및 태아 발육과 관련된 장애	P05-P08
3. 출산외상	P10-P15
4.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장혈관 장애	P20-P29
5. 출생전후기의 특이한 감염	P35-P39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P61
7. 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P70-P74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기계통 장애	P75-P78
9.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 관련되는 병태	P80-P83
1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P90-P96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5】

질병 고도장애 판정기준

1. 팔·다리의 절단장애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애

- (1)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3)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4)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5) 두 팔을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6) 두 팔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7)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8)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9) 두 다리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10)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척추의 기능장애

- (1) 척추의 병변으로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척추의 기능장애는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완전강직(척추가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이 있어야 하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의 완전강직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의 기능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4. 뇌병변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경우

- (2)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경우

- (3) 아래 10.의 (3)뇌병변장애의 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5. 시각장애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청각장애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정신지체장애

- (1)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작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

8. 신장장애

-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9. 심장장애

-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아래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 증상중등도(5점 만점)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만점)
 - (다) 검사소견(10점 만점)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만점)
 - (마) 입원병력(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바) 입원횟수(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사) 치료병력(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0.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애가 발생되어 아래의 장애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 하나의 장애로 봅니다.)

1. 뇌병변 장애가 팔·다리의 절단장애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애와 동반된 경우
2. 언어장애가 정신지체장애와 동반된 경우)

(1) 팔 · 다리의 절단장애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③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④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 · 다리의 기능장애

- ①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②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③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④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⑤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⑥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⑦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⑧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⑨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⑩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경우
 - ⑪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⑫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 ·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애

- 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②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경우
- ③ 아래 11.의 (3)뇌병변장애의 ①과 ②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4) 시각장애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경우
-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애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 ②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언어장애

- ①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②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③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④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7) 정신지체장애

- 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

(8) 심장장애

- 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아래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5점 만점)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만점)
 - (다) 검사소견(10점 만점)
 -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만점)
 - (마) 입원병력(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바) 입원횟수(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사) 치료병력(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11.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애가 발생되어 위 10.의 장애
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해당되고 아래의 장애중 1가지 이상
에 해당되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 하나의 장애로 봅니다.

1. 뇌병변 장애가 팔·다리의 절단장애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애와 동반된 경우
2. 언어장애가 정신지체장애와 동반된 경우)

(1) 팔·다리의 절단장애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④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2) 팔·다리의 기능장애

-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②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③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④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⑥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⑦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⑧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⑨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 ⑩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⑪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⑫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⑬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3) 뇌병변장애

- ①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전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경우
- ②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메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③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아래 ㉠와 ㉡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경우
 - ㉡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메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시각장애

- ①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 ②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청각장애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이하인 경우
- ③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언어장애

- ①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②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아동 41~96%, 성인 24~96%)
- ③ 자음정확도가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④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주) 각 장애의 장애상태, 세부 판정기준, 판정시기, 장애진단전문의 및 장애진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별표 16】

특정부위·질병 분류표

구 분	특 정 부 위 · 질 병
1	위·십이지장 또는 공장
2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3	직장 또는 항문
4	간장, 담낭 또는 담관
5	췌장
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7	코 (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8	인두 또는 후두
9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귀밑샘) 또는 설하선
10	귀(외이, 고막, 중이(가운데 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12	신장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15	유방(유선 포함)
16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18	고환(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19	갑상선
20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21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22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23	천골부 또는 미골부(해당신경 포함)
24	좌견관절부
25	우견관절부
26	좌고관절부
27	우고관절부

0507-10703093-13344132

구 분	특 정 부 위 · 질 병
28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30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32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3	서혜부(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한함)
34	식도
35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36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37	수골(手骨)
38	족골(足骨)
39	상악골(위턱뼈, 上顎骨) · 하악골(아래턱뼈, 下顎骨)
40	암
41	담석증
42	요로결석증
43	연골증, 관절증, 관절염
44	척추질환

0507-10703093-13344132